KOSHA Guide C-46-2023

- (9) 화약, 폭약 또는 도폭선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.
- (10) 굳어진 폭약은 반드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고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11) 발파현장에는 여분의 화약류를 들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12)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현장에 남겨두지 말고 밀폐하여 신속하게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(13) 화약류 취급중에는 항시 도난에 주의하고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.
- (14) 얼어서 굳어진 다이너마이트는 50℃ 이하의 온탕속 용해기 또는 30℃ 이하의 온 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풀어주어야 하며, 난로나 증기관 그 밖의 높은 열원에 직접 접근시키거나 무리하게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4.3.4 현장내 운반

- (1) 화약류를 갱내 또는 멀리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.
- (2) 화약, 폭약 및 도폭선과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여서는 안된다. 부득이 1인에게 운반시킬 때에는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용기에 넣고 건전지 및 전선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등선,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 부근을 피하고,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딛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6)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 사양서에 명기된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
4.3.5 검사